**사이언스 디톡s 플랫폼(반응형 웹/앱) 개발**

**과 업 지 시 서**

1. **사업개요**
2. 사업 개요

|  |  |  |
| --- | --- | --- |
| **구분** | **내용** | **비고** |
| 사업명 | 사이언스 디톡s 플랫폼(반응형 웹/앱) 개발 |  |
| 기간 | 2022. 5. 2(월) ~ 9. 30(금) 5개월 |  |
| 예산 | 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개발 장비 임차비 포함) |  |
| 개발 목적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의 니즈에 맞추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과학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과학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일방향 정보 전달이 아닌 쌍방향 콘텐츠를 통해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 및 콘텐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
| 개발 방향 | \* MZ세대 친화적인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제공 플랫폼 개발\* 스와이핑 동작을 통한 관심사 표현 및 관심사에 따른 개인화 맞춤 콘텐츠 서비스 구성\* 실시간 보이스 토론, AI 챗봇을 통한 질문하기 서비스 구성\* 이를 관리한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CMS) 구축\*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오픈소스 공개 필요 |  |
| 주요 기능 | # 사이언스디톡s : 좌우의 스와이프 기능으로 간단한 관심 여부를 표현, 스크롤하여 세부 콘텐츠 확인 가능 # v토론 : 실시간 참여형 라이브 토론의 형태 (ex. 클럽하우스)# q챗 : AI 챗봇 시스템 도입, 청소년 스스로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산파법으로 안내# 기존상용서비스 활용 또는 연동 가능 | ※ 기능은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1. **과업내용**
2. 과업개요

|  |  |  |
| --- | --- | --- |
| **구분** | **내용** | **비고** |
| 사업명 | 사이언스 디톡s 플랫폼(반응형 웹/앱) 개발 |  |
| 기간 | 2022. 5. 2(월) ~ 9. 30(금) 5개월 |  |
| 예산 | 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개발 장비 임차비 포함) |  |
| 과업범위 | 가. 기획 : 보이스 토론, AI 챗봇을 포함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나. 디자인 및 개발 : 반응형 웹/앱 플랫폼 구축, CMS 등 주요 기능 실현 및 전반 구축 다. 기타 : 주요 기능 설명 보고서 작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  |

※ 위 사항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세부 과업내용
2. 기획 : 플랫폼 개발과 관련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3. 과업지시서 상의 제안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개발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4.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이트 구축에 관한 세부집행계획, 주요 사용자 환경과 기능 계획, 구성안(Layout) 제출 협의
5. 디자인 및 개발 : 반응형 웹/앱 플랫폼, CMS 등 주요 기능 실현 및 전반 구축
6. 모바일 앱 기반의 반응형 웹/앱 개발
7. 데이터 및 콘텐츠 발행과 관리하기 위한 CMS 구축
8. 소스코드와 데이터 퍼블리시 기능 구현
*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사항은 발주사와 사전 협의 필요
1. 기타 : 주요 기능 설명보고서 작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향후 보고서 작성 지원 등
2.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3. 사이트 기능과 개발 목적을 고려해 구축을 빈틈없이 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
4.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면 반드시 과업 진행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함
5.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여러 비용은 사후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정산 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으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처리함
6.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 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7.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과업 수행 지침**
9.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10.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1.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2.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참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13.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 사항이 빠지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14. 운영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15.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16.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17.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18. 제안서의 총사업비는 80,000천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대행수수료,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최종 사업비는 행사 종료 후 정산 완료 시 지급)
19. 사업의 시행
2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서에 따라 본 ‘사이트’ 구축을 시행함
2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개발 방향이 초기 구상과 맞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대해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
2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개발자와 기획자의 요청을 최대한 수행하도록 함
24. 발주기관 지도와 감독
25. 발주기관은 이 행사와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함
26.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이트 구축과정에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27.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8. 손해배상
29. 계약상대자는 사이트 구축과정에서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만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0.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사이트 구축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바로 배상하여야 함
31. 계약의 해지
32.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 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33.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34.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하면서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35.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6.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7.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함
38. 특약
39. 계약상대자는 동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를 지원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함
40. 특히 사업제안서의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와 같이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재하도급하는 경우, 동 ‘행사’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계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